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2월 1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국장 김종호)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의견청취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안 제2조제3항)
 - 관계공무원을 7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축소
 - 1)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람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주택등의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의 사

- 위원 위촉 해제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4호 ~ 제5호)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청취대상자 확대(안 제8조)
 -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영등포구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12. 시행)에 위원의 해촉 조항이 신설되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와 제6조의3제1항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 비율이 높은 관계공무원을 7명에서 5명 이내로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토록 규정함.
-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를 당초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함. 이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에서 직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위촉 해제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5 호
----------	---------

제출연월일 : 2016.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한 위원회 구성

○ 제2조(구성) 제3항

1. 관계공무원 중 7명 이내 ⇒중 5명 이내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8명 이내 ⇒중 10명 이내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 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의견청취 대상 확대

○ 제8조(의견청취)

-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평가 : 규제사무 없음
- (2) 성별영향평가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법령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의견반영)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기간:2015.12.17 ~ 2016.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할 때”를 “원할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한다.

제8조 중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을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관계공무원 중 7명 이내</p> <p>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8명 이내</p> <p>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 때</u></p> <p>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연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u>않다고 판단될 때</u></p> <p>3. 스스로 사임을 <u>원할 때</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경우에 이를</u> 소집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p> <p>1. ----- <u>5명 이내</u></p> <p>2. ----- <u>10명 이내</u></p> <p>제3조(위원위촉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u>없게 된 경우</u></p> <p>2. ----- ----- ----- <u>판단될 경우</u></p> <p>3. ----- <u>원할 경우</u></p> <p>4. <u>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u></p> <p>5. <u>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제6조(회의 및 의결) ① ----- ----- <u>경우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관계공무원 및 전문가</u>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8조(의견청취) ----- ----- <u>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u>을 ----- -----.</p>